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익산로컬푸드 직매장 모현점 생산·출하 내부규칙

제1조(목적)

이 내부규칙은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익산로컬푸드 직매장 모현점에 대한 농축산물 등의 출하·입점 관리기준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하자 등)

① ‘출하자’란 농축산물 등을 생산하여 익산로컬푸드 직매장 모현점에 내어 놓는 사람(법인을 포함, 이하 같음)을 말하며, ‘입점자’란 별도의 약정을 통해 농축산물 등을 익산로컬푸드 직매장 모현점에서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출하자 등은 익산시의 시민 또는 익산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을 이해하며 그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자로 신규 입점자 과정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생산 계획과 출하약정 체결 및 교육)

① 원활한 생산 및 출하를 위하여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 라고함)는 기획생산 등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는 매년 연간 출하신청서를 제출받아 필요할 경우 출하자별 출하물량을 수시 조정하여야 한다.

② 출하신청 계획서에 등록된 농산물에 한하여 출하가 가능하다. (개정 2022.03.07)

③ 품목별 출하계획에 대하여 별표 1 「로컬푸드 생산·출하 품목 분류표」를 참고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출하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출하약정서」에 서명하여 센터에 제출한다.

④ 생산계획수립과 출하·입점에 관한 세부적인 일정과 방법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출하·입점자는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신규교육, 보수교육, 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4조(생산·출하기준)

① 출하 및 입점은 익산시 지역에서 생산되고 가공된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을 원칙으로 하고 로컬푸드 농산물 관리기준·품목별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기준을 지키지 않아 익산로컬푸드 이미지 손상이 예상 될 경우에는 센터에서 진열 상품을 지체 없이 철수하고 출하기준 위반 제재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단, 익산시와 센터가 기획 주도한 상품에 대하여는 동 기준에 관계없이 출하할 수 있다.(개정 2021.10.06.)

② 센터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취급하는 생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별도의 자체

인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시기에 따라 시중 가격의 폭등을 이유로 출하를 기피 하는 생산자는 차후 해당 품목의 출하를 제한할 수 있고 흑한기 및 흑서기에 생산 출하한 자에 대해서는 평상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상품의 특수성에 따라 수급안정을 기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가 매입 판매할 수 있다.

⑤ 출하량이 많은 경우, 센터는 출하량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03.07)

⑥ 출하자는 시(市)에 허가 받지 않은 자연채취 농산물의 경우, 출하가 불가하다.

(개정 2022.03.07)

제5조(품질검사 및 가공품 출하기준)

① 센터는 출하 및 진열에 앞서 제4조에서 정하는 생산·출하기준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생산자 요구 시 별지 제3호 서식 「출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가공 관련 생산자는 품목별로 별지 제4호 서식 「원료수급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출하중지 조치를 하고 별지 제5호 서식 「출하중지 통보」를 할 수 있다.

③ 가공생산물의 품질검사기준은 별지 제6호 서식 「로컬푸드 가공품 출하 지침」과 별표 3 「로컬푸드 품목별 취급 기준」의 가공품 취급 기준을 따른다.

제6조(생산·출하점검)

① 센터는 품목별 생산·출하 기준에 따라 경작, 파종 및 정식, 재배, 수확, 저장 등의 생산과정을 재배 시기별로 수시 점검 한다. 그에 따라 임차 농 또는 새로운 품목 추가의 경우 파종 및 정식 이후부터 수확기 이전에 의무적으로 관계서류(농업경영체)와 함께 통보하여 센터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출하자는 출하하는 모든 생산물을 출하 7일전 사전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03.07)

③ 센터는 생산·출하 기준에 따라 출하량과 출하시기의 조절, 출하품질 및 출하방법의 제시 출하가격 등을 사전 점검한다.

④ ①~③항에 따라 사전에 재배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품목을 등록 한다.

제7조(가격결정)

① 센터 설립 목적과 생산·출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② 가격은 해당 품목 생산자가 직접 정함을 기본원칙으로 매장운영·관리 팀과의 출하 전 조율을 거쳐 결정한다.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게 표시하여 매장 이미지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을 시에는 진열상품을 별도 보관 관리 할 수 있으며 출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매장 관리팀은 매주 대표 품목에 대하여 농산물유통공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조사한 소매가격을 참고로 적정 가격을 생산자에게 권장 게시하고 그 외는 매장관리자와 협의 결정한다.

제8조(긴급 수급조절)

생산 및 환경변화 등 단기적으로 수급조절이 원활하지 못하여 생산약정을 하지 않은 생산자의 생산품목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센터장의 결재를 득한 후 수급 조절하고 차후에 해당 생산자에게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 및 그에 준하는 기본 조치를 취한다.

제9조(안전성 검사)

- ① 센터는 생산·출하하는 모든 생산물에 대하여 각종 안전성 검사를 해당 생산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해당 품목이 6개월 이상 출하가 중단되었다가 재출하시에는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안전성의 부적합 기준은 출하 전, 후 검사로 구분하여 조치한다.
- ④ 안전성검사 운영 및 관리는 센터가 주관하고, 시(市)는 주요품목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다.
 - 가. 출하 전 부적합 판정 시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출하 할 수 없으며 재검을 실시하여 적합 판정 시 출하 할 수 있다.

다만, 재검에서도 부적합 판정 시에는 해당 품목(동일 하우스 또는 동일 지번의 생산물)에 대하여 출하를 제한 한다.
 - 나. 출하 후 부적합 판정 시 해당 품목 재배 포장(동일 하우스 또는 동일 지번)의 생산 농산물에 대하여 출하를 제한 한다.
- ⑤ 가공품 출하자의 경우 「식품위생법」을 반드시 준수하며, 구매 소비자들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06.)

제10조(매장 진열)

- ① 출하자 판매대 배정은 품목별 지정 매대에 선착순으로 진열한다.
- ② 소포장실은 오전7시부터 이용 가능하며, 라벨지 부착 후 9시 이전에 진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10.06.)
- ③ 출하자는 별표4 「직매장 입점 농산물 소포장 단위」를 준용하여 포장하며, 라벨지에 출하자·상품명·가격·출하일자 등을 입·출력하여 직매장에 진열한다.
- ④ 출하 월 일은 직매장 출하일이며 라벨지에 허위로 출하일을 기입하지 않는다.
- ⑤ 직매장 운영시간 중 매대가 비어 있을 경우 상품을 적절히 추가 진열한다.

제11조(판매일수)

- ① 신선 농산물은 1일 유통을 원칙으로 하며 품목별 판매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품목 외 상품에 대하여는 생산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별도로 판매일수를 지정하며, 과채류·근채류 세부 품목별 판매일수는 별표 6을 참조한다.

(개정 2022.03.07)

1. 엽채류: 48시간(상추 24시간)
2. 과일·과채류 : 48~72시간 (늙은 호박, 땅콩호박 30일, 단호박 7일)
3. 근채류 : 72시간
4. 건나물류 : 30일

5. 벼 : 48시간(개정 2021.10.06.)
 6. 계란 : 7일
 7. 백미 : 진열일로부터 30일
 8. 현미·보리쌀 및 기타 도정잡곡 : 진열일로부터 30일
 9. 기타잡곡 : 진열일로부터 30일
 10. 가공식품 : 해당제품 유통기간 범위 내 (최대 90일)
 11. 육계 : 72시간(냉장의 경우)
 12. 꽃(절화) : 72시간
 13. 화분 및 다육 : 30일
- ② 제1항으로 정해지지 않은 품목은 유사 품목의 정한 바를 준용하되 계절과 상품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③ 신선 농산물의 경우 동절기 진열기간(11월 ~2월)을 하절기의 2배 기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22.03.07)
- 단, 손질된 (간편) 농산물의 경우 동절기 상관없이 기존 진열기간을 따른다.

제12조(수수료)

- ① 농산물, 축산물의 출하수수료는 판매대금의 10%, 가공식품의 수수료는 판매대금의 15%(부가세 별도), 순회·거점 수거의 출하수수료는 판매대금의 12%로 한다.
단,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직매장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1.10.06.)
- ② 반찬코너, 축산물매장, 베이커리 등 입점 수수료는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일반 농축산물의 출하수수료 요율 이상으로 별도로 아래와 같이 약정하여 운영하며 약정 시점의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반찬코너 수수료 판매대금의 12센트(부가세 별도)
 2. 축산물 정육코너 수수료 판매대금의 12퍼센트
※오리훈제, 양념육에 대한 부가세 별도
 3. 베이커리 코너 수수료 판매대금의 10퍼센트(부가세 별도)
- ③ 수거서비스 출하수수료는 판매대금의 12%한다. 단, 이동 수단이 없는 취약 농의 경우 10%를 적용한다. (취약농은 만65세이상, 0.2ha미만)
- ④ 순회수집 지원 대상 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생산자
 2. 주민등록상의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참여농가
 3. 자기 차량이 없고 교통편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참여농가
 4. 영농규모가 0.2ha미만인 참여농가
 5. 다품목 소량 생산방식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참여농가

제13조(대금정산)

- ① 정산 대상은 POS 계산대를 통해 판매된 금액이며, 정산일은 농축산물 매달 1~10일 판매분은 15일에 11~20일 판매분은 25일, 21~말일까지는 다음달 5일날, 가공식품은 1~15일은 20일, 16~말일 다음달 5일로 한다. (개정 2021.10.06.)
- ② 판매 대금에서 출하 수수료를 공제 후 농업인에게 정산 지급한다.

제14조(진열상품 관리 및 미판매 재고분의 처분)

- ① 출하자의 미판매분은 직매장 영업 종료시간부터 익일 영업시간 전까지 하도록 한다.
- ② 진열품이 상품성 유지에 문제가 있어 판매가 어렵거나 매장 이미지 손상에 염려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선별 불량, 신선도 저하, 병반, 벌레 발생, 부패·변질, 변색 등) 직원은 직권으로 진열품을 철수 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출하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한다.
- ③ 진열기간 경과 상품에 대하여 해당일 마감 시 기록 후 따로 보관·관리 한다.
- ④ 미판매 재고분을 출하자가 찾아가지 않아 변질 되거나 변질이 우려되는 경우 직원이 직권으로 폐기 처분 할 수 있다.

제15조(하자 등의 처리)

출하 또는 입점 판매상품에 대하여 제기된 소비자 불만 사항 등에 대하여는 출하·입점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회수·대응·대책·비용부담 등) 하여야 한다.

제16조(출하 제재사항) (개정 2022.03.)

- ① 센터는 출하 자가 별표2 「생산·출하기준」을 위반 시 출하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출하자에게 사전 통지한다.
- ② 출하 제한을 할 경우 사전에 출하 농가의 의견을 별표 8호 서식에 의해 제출 받아야 한다.
- ③ 출하 정지 처분은 서면으로 하되 의견 진술 결과 등을 참작하여 처분 기간의 1/2을 경감할 수 있다.
- ④ 기준위반 및 제재에 대한 결과는 기록하여 보관하고, 1차 및 2차 조치사항의 소멸시효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분쟁 조정)

- ① 생산자 및 소비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센터가 진열 또는 보관 중인 물건을 임의로 절취 한 경우 센터는 경찰에 고발 할 수 있다. 이때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절취 한 품목과 수량에 대한 해당 금액 전액을 변상해야 한다.
- ② 본 규칙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원에서 해결 한다.

제18조(기타)

-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산물(진공포장 가공품·건어물 등)에 대하여도 입점을 허용할 수 있으며, 로컬푸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